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청년) 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로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실업계를 제외한 고3재학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자,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속에 선정된 자)
(경력단절여성)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및 확인 방법]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9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1,887,791	3,424,735	5,225,306	6,004,259	6,438,949
60%	1,132,674	2,504,841	3,153,183	3,602,555	3,863,369
월보험료 납부액	39,643	71,919	110,361	126,089	135,21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x 1/19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3.5%)

제2호 (고령자) 만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확인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제 2017-95호, 2018.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확인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확인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의 지원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 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4. 구조대상 범죄피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5. 장애: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중상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 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확인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하는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결과 취득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다.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라.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마.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 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확인서, 교도소 수용 확인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사.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 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 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 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시) 저소득자로 '15. 4. 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5. 8. 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20. 3. 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시) 일반근로자로 '15. 5. 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5. 7. 15. 고령자가 된 경우 '15. 7. 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 _ 추가

1. (기초생활수급자)

-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확인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 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 확인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수당 수급자)

-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확인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4.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확인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5. (장애인연금 수급자)

- 정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 확인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6. (다문화 가족)

-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따른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름)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 확인방법: (결혼이민자 등)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확인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또는, 관계기관(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직인 포함 확인서(공문)
(아동·청소년) 국적취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확인과 국적취득자의 기본증명서의 귀화 확인, 국적 미취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확인과 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 _ 국가재난 관련

※ 국가재난(산불, 코로나) 관련 취약계층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아래 기준을 준용하되, 그 외 국가재난(산불, 코로나) 극복 기여자 및 그 가족,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발굴 가능

1. (의료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그 가족(대상자 포함 최대 5인)

- 코로나-19 거점병원 및 지정병원, 선별진료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영양보호사 및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종사자 등

《 선별진료소·지정병원 의료진 현황 》

- 1) 선별진료소(589개소) : 보건소 239개소, 일반병원 350개소 (5.29. 기준, 행안부)
- 2)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 전담병원 67개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29개소
- 3) 정부 파견 의료인력 : 3,729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 30. 기준)
 - 대구·경북 파견 의사 1,197명, 간호인력 1,439명, 임상병리사 및 영양보호사 386명 등

* (수혜자확인) 코로나-19 전염병 거점병원·지정병원·지자체의 공문 등

2. (자원봉사자) 의료 및 소독·방역 봉사자, 방역물품제작 및 배부, 기타 지원 종사자

* (수혜자확인) 자원봉사자단체(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및 지자체 공문 등

3. (공무원)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보건·지자체 등의 지원인력 등

- 행정안전부,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직원 및 코로나 19투입 공무원 등

* (수혜자확인) 해당 기관에 관련자 명단의 공문요청을 통한 수혜인원 확인

4. (휴교학생) 코로나19로 인해 휴교를 하거나 휴교를 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 특별재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지역의 학생 등

* (수혜자확인) 코로나로 인해 가정학습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교외(현장) 체험학습 계획서(학교담임 등의 결재 필요) 등